



5-2 주소(주거지) 이외의 변경신고

중장기체류자는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·지역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로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변경수속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체류기간, 체류자격의 변경도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합니다. 시구정촌의 관청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. ([B2 기간, 갱신, 변경, 영주, 자격 외 활동허가, 재입국 및 취득, A1 - 4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의 수속](#) 참조)